

# 디자인학과 운영 규정

제정 2007. 02. 28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 디자인학과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디자인학과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공 교육과정 개발 및 관리운영, 평가에 관한 사항
2.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운영, 평가에 관한 사항
3.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
4.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사항
5. 학생 취업 관리에 관한 사항
6. 취업 및 교육 관리를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
7. 학생 상담 및 재학관리에 관한 사항
8. 교육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행사 관리에 관한 사항
9. 그 외의 학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 학과에는 학과장을 두며, 학과장은 학과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학과운영에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 학과교수회를 두며, 학과교수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학과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회) ① 학과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학과교육과정위원회 및 산학교육위원회를 둔다.

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장이 담당한다.

③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은 학과 교원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선임한다.

제5조(위원회 업무) ① 학과교육과정위원회의 업무는 전공교육과정의 개발, 운영 및 평가, 비교과프로그램의 개발,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,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학교육과정위원회에 제출한다.

② 산학교육위원회의 업무는 학과 및 산업체 양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며, 상호 필요시 요청에 협력한다.

제6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과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제정 규칙은 200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